

제6회 송건호언론상 시상식

시상식

일시: 2007년 12월 17일 (월) 오후 6:30

장소: 서울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청암언론문화재단 한겨레신문사

제6회 송건호언론상

수상자: 조용수(趙鏞壽) 민족일보사 사장

'송건호언론상'심사위원회는 '조용수 민족일보사 사장'을 '제6회 송건호언론상'수상자로 선정합니다.

수상자는 1930년 경남 진양에서 태어나 50년 연희대 정경학부에 입학하였고, 51년 일본으로 건너가 거류민단에서 일하며 민단 기관지인 '민주신문' 제작에 참여하여 언론인의 자질을 연마했습니다.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자 귀국한 수상자는 7·29총선에서 혁신계 정치세력의 의회진출이 거의 좌절되자 이들을 대변할 신문 창간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재일교포를 상대로 자금을 마련한 수상자는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고,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고, 노동대중의 권익을 옹호하고, 양단된 조국의 비애를 호소한다'는 사시를 내세우며 1961년 2월 민족일보를 창간하였고, 창간사를 통해 소수의 이익이 아닌 다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민족일보는 파격적인 의제 선정과 논설을 통하여 남북문제, 한·미 경제원조협정을 비롯한 한·미문제, 민주당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2대 악법인 반공법·데모규제법 문제, 용공조작 문제, 4·19혁명을 통해 제시된 혁명과제 등에 대하여 진보적인 주장을 했고, 혁신계 정당과 단체의 활동을 비중 있게 다루고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또한 다양한 통일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분단상황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결과 민족일보는 창간 즉시 대중의 큰 호응을 얻어 단기간에 영향력 있는 주요 신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같은 해 5·16 군사 쿠데타로 들어선 군사정권은 반공을 제일의 국시로 삼겠다는 발표 후 용공분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대적으로 혁신계 인사들과 언론인을 체포합니다. 수상자는 다른 신문사 동료들과 5월18일 체포되었고, 5월 19일 92호를 마지막으로 민족일보 발행은 중단되고 5월 27일 폐간 통보를 받습니다. 혁명재판소는 6월 22일 제정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수상자에게 소급적용 하였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고무·동조하였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군사정권은 국내외의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12월 21일 사형을 집행했고, 국내 언론이 침묵하는 가운데 62년 국제저널리스트협회는 '국제기자상'을 추서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한국언론사에서 가장 큰 비극이라고 손꼽히는 이 사건으로 인해 민주사회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진보적인 매체의 성장이 저해됐으며, 언론인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강화됩니다.

이 사건은 권위주의적인 정권 아래서 금기시 되었지만, 그 진상을 규명하려던 눈물겨운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의 처리를 '반인권적·반민주적 인권유린 행위'로 보고 2006년 11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현재 사법부에서 재심이 진행 중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냉철한 통찰력을 지닌 언론인이었고, 민족을 생각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통일운동가였던 조용수 사장의 뜻이 고 송건호 선생께서 남기신 민족·민주·자유·비판 정신에 맞다고 판단하여 이 상을 드리도록 결정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이 상이 높은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꺾인 조용수 사장의 넋을 달래고, 그 동안 갖은 어려움을 딛고 묵묵히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신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수상자와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가 회복되고 나아가 올바르게 평가 받고 역사에 기록되는 데 이 상이 보탬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을 편견 없이 공정하게 바라볼 만큼 이제는 우리사회가 성숙하고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언론수난의 상징이었던 조용수 사장은 이제는 투철한 언론정신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언론을 일시적으로 누를 수는 있어도 역사는 영원히 기억한다는 엄중한 교훈 앞에서 지금도 언론을 향해 펼친 억압의 손길이 있다면 거두기를 희망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용수 선생이시여 부디 편히 영면하소서.

2007년 11월 28일

제6회 송건호언론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이상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위 원 정경희 언론인
위 원 김태진 도서출판 다섯수레 대표
위 원 방정배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위 원 권혁남 한국언론학회 회장
위 원 한진만 한국방송학회 회장

조용수의 삶과 민족일보

1930년 경남 진양의 유복한 양반 집안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난 조용수는 국회의원을 지냈던 삼촌과 외삼촌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 공부를 시작하면 코피가 나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열중하던 그는 보통학교와 중학교 재학 시절 수석을 놓치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고전음악에 심취했고 철학책을 즐겨 읽었다. 1945년 진주중학교 2학년 재학 중에 해방을 맞은 그는 3학년 시절 당시 찬탁과 반탁 노선 투쟁으로 학내에서 심한 좌우익 대결을 겪게 된다. 우익활동을 했던 그는 좌익학생들로부터 심한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자퇴하고 대구 대륜중학에 편입하게 된다.

50년 연희전문 정경학부에 입학한 후 그 해 6월 전쟁이 나자 피난하여 국회의원이던 외삼촌을 경호하는 경남경찰국 소속의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진주중학교 선배였던 재일거류민단 정동화 감찰위원장을 만난 후 일본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51년 9월 일본으로 밀항을 감행하여 메이지대 정경학부 2학년에 편입학한다.

당시 재일동포 사회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와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민단)'으로 분열되었고, 민단도 혁신적 인사와 친이승만 세력으로 갈라져 있었다. 1953년 5월 30일 메이지대학에서 열린 한국학생동맹 제10회 정기총회에서 문화위원으로 선출된 그는 이 당시에도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입장에 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민단 기관지인 '민주신문사'와 개인이 운영하는 '국제타임스' 논설위원으로 언론인의 자질을 닦았고, 클래식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일본의 음악잡지에 음악평을 쓰며 학비를 보충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조용수와 함께 하숙을 하며 가까이 지냈던 윤숙일에 따르면, 조용수는 좌우익 논쟁이 벌어지면 한쪽 편을 들지 않았고 사고나 행동에 있어서 자유주의자의 면모를 보였다고 한다.

이승만 정권 아래서 59년 2월 7일 진보당 당수 조봉암가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선고 받자 민단 인사들이 '조봉암 구명위원회'를 조직했고, 민단 내 조직부 차장이던 그는 사무국원으로 참여하여 서명운동을 열성적으로 벌였다. 59년 6월 15일 거류민단 중앙총본부가 재일동포 보호시책에 미온적이던 이승만 정권을 불신한다고 성명을 발표하자 이승만 정권은 민단을 수습한 후 지도부를 친이승만 인사들로 교체하였다. 구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월 31일 조봉암이 처형되자 그는 8월 2일 열린 '조봉암 추도회'에 앞장 선다. 이때 그는 조봉암의 비서출신으로 진보당 사건 때 병보석으로 출감한 후 일본으로 망명하여 반이승만 운동을 벌이던 이영근을 운명적으로 만난다. 그와의 만남을 통해 혁신계의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용수의 행적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민단 인사들은 그를 도키치현의 민단 부단장으로 보냈다. '총련'이 재일동포를 북한으로 보내기 시작하자 그는 '재일한국인 북송반대 도키치현 위원장'을 맡았고, 59년 12월 민단 청년결사대와 함께 신주쿠역에서 북

송반대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조봉암 구명운동에 참여한 전력 때문에 이승만 정권하의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민단 내에서도 좌천되어 절망의 시기를 보내던 그는 재일교포 사업가의 딸인 강씨와 결혼을 앞두고 60년 '4월혁명'이 일어나자 결혼식 직후 장인과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조국을 위해 일하고자 혼자 한국으로 향한다.

'4월혁명'은 기존에 억눌리고 침묵하던 민중의 각성과 진출을 불러 일으켰고, 노동운동을 비롯한 각 부문에서 민중운동이 비약적으로 분출되어 한국사회는 전례 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였다. 혁명 이후 국내의 혁신세력은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총연맹으로 분열되었고 통합은 멀기만 했다. 그는 7·29 총선을 앞두고 경북 청송군에서 민의원 선거에 사회대중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하였고, 혁신계도 전국에서 일곱 명만 당선되어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조용수는 총선을 통해 혁신의 진정한 의미를 알릴 수 있는 신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1월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동포를 상대로 창간 자금을 모금했다. 이 때 이영근은 재일동포의 돈을 모금하는 데 중간역할을 했고 자금은 주로 민단체 인사들이 내놓았다. 12월 귀국한 조용수는 62년 1월 25일 민족일보사를 설립하고 사장으로 취임한다.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고,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고, 노동대중의 권익을 옹호하고, 양단된 조국의 비애를 호소한다'는 사시를 내세우고 1961년 2월 13일 민족일보 창간호를 발행한 그는 창간사를 통해 소수의 이익이 아닌 다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한다.

민족일보는 파격적인 의제 선정과 논설을 통하여 남북문제, 한·미 경제원조협정을 비롯한 한·미문제, 민주당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2대 악법인 반공법·데모규제법 문제, 용공조작 문제, 4·19혁명을 통해 제시된 혁명과제 등에 대하여 진보적인 주장을 했고, 혁신계 정당과 단체의 활동을 비중있게 다루고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또한 다양한 통일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분단상황 극복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 결과 민족일보는 창간 즉시 대중의 큰 호응을 얻어 단기간에 하루 4만부 이상을 발행하는 주요 신문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장면 정권 아래서 신문사 운영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신문사 창립도 전에 국회의원인 민족일보가 '조총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다고 국회에서 발언하여 공방을 일으켰다. 또한 3월 2일에는 정권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민족일보의 인쇄대행을 하던 서울신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신문발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조용수는 언론인이지만 동시에 정치 지향적이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는 "어떻게 하면 통일적이고 민주애족적인 당 하나를 쟁취적으로 건설해 낼 수 있으며, 그 당의 힘

을 중핵세력으로 한 애족적이며 투쟁적인 민족전선적 전체조직을 세력적으로 강화 또는 창건해 낼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했다. 그러나 그의 희망과는 반대로 혁신세력은 분열을 거듭했다. 조용수는 16개 정당 사회단체가 참가하는 민간운동기구인 ‘민족민주통일협의회’(민자통)의 출범에 적극 참여했지만 민자통은 내부적으로 통일방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했고, 2월 25일 민자통 결성대회가 열렸지만 혁신세력의 분열과 반목은 계속됐다. 조용수는 2월 28일 민자통을 탈퇴하고 만다.

민족일보는 4월혁명 직후 이른바 혁신세력의 논리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신문이었다. 혁신세력의 개념은 기존의 보수세력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혁신세력은 그 내부에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적 견해 차이를 갖고 있는 다양한 집단을 통칭한 것이다. 민족일보는 어느 특정 혁신계 정당이나 단체를 대변하거나 그 기관지 격인 신문은 아니었다. 조용수는 혁신정당인으로서 당적도 없었고 ‘민자통’도 창립직후 곧 탈퇴했고, 간부진도 특정 혁신 정당이나 혁신계 단체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혁신계 인사들을 망라했다. 민족일보는 혁신계 정당과 단체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다뤘고 다른 신문과는 달리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민족일보의 논조를 굳이 구분하자면 당시 혁신정당 중에서 가장 온건했고, 사회운동보다는 기존 체제 내의 정치 활동에 보다 주력했던 ‘통일사회당’에 가까운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장면정권은 3월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통일논의와 운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조용수와 민족일보는 2대법 반대운동에 적극 나섰다. 3월 22일 조용수는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시위 도중 연단에 서서 2대법이 언론탄압의 도구로 어떻게 악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조모조목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정권과 민족일보의 긴장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 무렵 조용수는 매우 지쳐 있었다. 민족일보사 내부에서는 논조에 대한 이견이 생겨 편집국장과 기자가 사퇴하기도 했고, 신문제작에 경영진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외형적으로는 신문 창간이 성공했지만 사장인 그는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아버지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다녔다. 연일 정부를 비판하고 비리를 폭로하자 민족일보에 대한 견제는 심해졌고 기자들은 공무원에게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고 쫓겨나기도 했다. 그 가운데 3월에는 일본에 있던 아내로부터 딸을 사산했다는 편지를 받고 그는 술자리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4월 들어 미국유학을 결심했고 신문사를 최근우 선생에게 맡기기로 하고 조용히 유학을 준비한다.

조용수는 시간만 나면 독립운동의 원로들을 찾아다녔다. 독립운동가들이 가난과 병고를 겪으며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보고 눈물을 삼키던 그는 ‘혁명유족 구호운동’을 61년 민족일보의 사업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회사 운영이 힘들었지만 그는 쌀가마를 전달하며 독립운동가들을 도와 주었다.

7·29 총선 당시 혁신계 정치인 일부가 '남북교류론' 등의 획기적인 통일정책을 주장했으나 대중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러나 총선 이후부터 지식인 사이에서 통일논의가 활발해졌다. 당시 사람들은 통일문제를 민족적 이상과 명분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현실과 직결된 문제로 생각하였다. 또한 나아가 통일은 편협한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넓게 세상을 이야기 할 수 있는 화두로 보다 확장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의 상징이었다. 통일논의는 한국을 영세중립화하여 미소의 세력권 대립에서 벗어나 통일하자는 온건파의 '중립화 통일론'과 혁신계 급진파의 '남북협상론', 보수세력의 '선건설 후통일론'이 서로 교차하였고 민족일보는 그 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혁신계 통일논의의 장을 제공하였다.

61년에 들어서면서 통일논의는 서서히 달아 올랐고 4월 학생들과 한국교수협회가 통일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등 대학가에는 통일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 조용수도 이미 통일운동세력의 주요 일원으로 활동하며 대학에서 강연하기도 했다. 5월 3일 서울대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이 '남북학생회담'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통일운동의 기운은 더욱 확산됐다. 학생들의 주장을 이상적이고 급진적이라고 여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민족일보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고 선전하는 보도를 적극적으로 한다. 5월 4일자 논설에서는 "지금이나 통일 된 이후에 있어서나 이 땅의 보수세력과 혁신세력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수혁신 양당제도가 확립되기 위한 가장 넓은 공통의 광장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민족이 단일민족으로서 통일 번영해야 되겠다는 국민 전체의 결의와 노력일 뿐일 것이다"라며 민주적인 질서 아래서 보수와 혁신의 공존을 주장하기도 했다.

나아가 조용수는 5월 16일자 사설을 직접 작성하며 "우리는 우리의 힘만 결집시킨다면 어떠한 강압자도 타도할 수 있고 여하한 간섭도 배제할 수 있다는 신념과 위대한 교훈을 얻은 것이다. 조국통일은 민족이 자주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공통의 민족감정, 이것이야말로 조국통일의 정신적 근거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민족지상의 과업을 수행하는 통일운동자에게 거듭 부탁하노니 통일전선에 보수와 혁신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공명을 다투는 소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요, 배타주의가 게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자 그를 진보적 인물로 보고 쿠데타의 주역들에 대해 희망을 가졌던 조용수는 17일자 신문사설에 "이 획기적인 군사위원회의 혁명과업 수해에 더 많은 영광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라며 기대를 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 달리 군사정권은 용공분자 색출이라는 명분으로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들을 대거 체포하기 시작했다. 조용수는 5월 18일 회사에서 체포되었고, 혁명검찰은 민

족일보 관련자 13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조용수가 위반했다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다음과 같다.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혁명재판소는 “대남간첩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중 일본으로 밀항 도피한 이영근으로부터 국내 혁신계 단합 공작비와 신문사 설립자금을 조달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한 후 이북 괴뢰집단의 주장내용과 상응한 한국의 중립화와 정치적 평화통일에 앞선 남북협상, 경제·서신·문화 교류 및 학생회담 등을 적극 찬동,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사설, 논설, 기사 등을 게재 발간케 하여 이를 선전, 선동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이북 괴뢰집단의 활동을 고무,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8월 28일 1심에서 조용수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10월 31일 상소심에서 상소를 기각했다.

상소심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형: 조용수, 안신규, 송지영
 - 징역 10년: 이상두, 이종률
 - 징역 5년 양수정, 이건호, 정규근, 양실근
 - 무죄: 조규진
- (전승택, 김영달, 장윤근은 1심에서 무죄 선고)

민족일보 사건에 대하여 대부분의 언론은 침묵했고, 한국일보만 8월 28일자 사설에서 관련자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며,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호소했다.

이 재판에 대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은 먼저 민족일보 관련자들을 체포하여 구금한 다음 그들에게 소급적용될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61년 6월 22일 제정하여 기소와 재판절차를 거쳐 처벌하는 과정을 밟았다. 조용수가 운영한 민족일보사는 영리법인으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서 인정한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아니므로 민족일보사를 운영한 행위를 정당활동으로 볼 수 없고,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의 주요간부로 활동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당시 혁신정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에서 간부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결국 조용수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

별법' 제6조가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형 선고는 위법하다. 또한 민족일보의 논지가 북한의 통일방안 노선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민족일보 사설이나 기사의 어떤 대목이 북한을 고무, 동조한 것인지 적시하지 않고, 또한 그 사설과 기사 내용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그 제목만을 언급한 채 북한을 고무, 동조하였다고 판결한 것도 중대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이영근은 당시 조총련과 민단, 북한과 남한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평가를 스스로에게 내리고 있었다. 조용수 사후 이영근은 한국을 내왕하며 박정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통일조선신문>을 「통일일보」로 바꿔 일본 내의 대표적 친한파 신문으로 성장시켰다. 90년 그가 별세하자 민족지 통일일보를 창간하여 '대 조총련 투쟁'과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을 이유로 정부는 국민훈장 중 최고인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간첩으로 몰던 이영근이 국가 유공자로 인정된 것은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판결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 준다.

61년 11월 미국을 방문했던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민족일보 사건 관련자들은 공개재판 결과 공산주의 간첩으로 입증되었고, 그들의 운영자금은 일본 조총련을 통해 북괴로부터 공급됐으며 이들은 북괴의 지령에 따라 행동하고 사실은 북괴의 지령을 따른 것이다. 이들은 언론자유를 남용한 것이며 신문인이라도 국법을 어겼을 때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국제신문인협회(IPI)', '일본펜클럽', '국제펜 본부'는 군사정권에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고, 외국에서는 조용수를 구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개되었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12월 21일 아침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사형을 확인했고, 이에 혁명검찰부는 법무부장관에게 사형집행의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은 '사형집행명령의 건' 기안용지에 서명하였다. 심상치 않은 조짐은 느꼈던 조용수는 평소와 달리 21일 오전에 만난 동생 조용준에게 아버님께 각별히 신경 쓰고 집안일을 돌보라고 당부했다. 그날 오후 3시가 넘어 조용수는 사형장으로 답답히 향했고, 사형 직전에 입회신부인 윤행중 신부의 인도로 천주교에 귀의했다 세례명은 '바오로'였다.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을 못하고 가는 게 억울하다. 정규근 동지에게 돈을 꾸어다 신문 만드는 데 썼는데, 갚아주지 못하고 가게 돼 미안하다"라는 짧은 유언을 남겼다. 집행은 4시 6분 시작하여 24분에 종료했다. 억울함 때문인지 그의 집행 시간은 남보다 유난히 길었다. 다음날 그의 시신은 인계 받은 가족들 그날 밤 9시 반 경에 망우리 공동묘지에 그를 묻었다.

62년 1월 쿠바에서 열린 '국제저널리스트협회' 정기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조용수에게 국제 저널리스트상을 추서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쿠데타정권을 규탄하며 그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한 점을 평가하며 이를 칭송한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부인 강씨는 그 후 일본에서 재가하였고 소식이 끊겼다.

63년 그의 묘는 남한산성 동문 밖 금복리 야산으로 이장되었다. 이장 당시 그의 몸은 채 흙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였다고 한다. 군사정권 아래서 민족일보 사건은 금기시 되었고 세인들에게 잊혀져 갔다. 그러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쉬지 않았다. 98년 12월 20일 공식추도식이 처음 열렸고 '민족일보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그리고 90년 '민족일보 영인간행위원회'가 출범한 후 9월 영인본을 발간했다.

대학시절부터 조용수 사장에게 관심을 기울이던 경향신문사 원희복 기자가 95년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평전>을 간행하여 그가 재평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최대의 필화사건인 민족일보 사건을 지난 12년간 끈질기게 취재보도 하고, 더 나아가 진상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006년 11월 과거사위원회로부터 명예회복이라는 성과를 얻어낸' 노력을 평가 받아 원기자는 2006년 12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최한 '민주시민언론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2006년에는 고려대 김민환 교수가 <민족일보 연구>를 출간하여 논조와 지면에 대하여 본격적인 학술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김 교수는 이 연구의 학술적 가치를 평가 받아 2007년 10월 '한국언론학회 학술상 저술상'을 수상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는 이 사건의 처리를 '반인권적·반민주적 인권유린 행위'로 보고 2006년 11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현재 사법부에서 재심이 진행 중이다.

민족일보 사건의 공소장, 판결문은 남아 있으나 현재 상세한 재판기록의 소재는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모른다. 동생 조용준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무부에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찾아달라는 편지를 보내 '검찰에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검찰은 당시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가 해체되면서 이관된 다른 기록은 있지만 민족일보 사건의 재판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이후 조사에 착수한 '진실위'도 국가기록원,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통해 기록의 소재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이 글은 경향신문사 원희복 기자님의 <조용수와 민족일보> 그리고 성신여대 사학과 홍석
률 교수님의 <4월 혁명 정국과 민족일보>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희복 기자님은 기
자사용을 허락해 주셔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축사 -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서형수

조용수 사장과 민족일보의 뜻을 기리며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송건호 언론상' 시상식에 참여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 조용수 민족일보사 사장님이 이번 수상자로 선정되신 것은 진보언론을 자임해온 한겨레신문에게도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전 한겨레신문 창간을 몇 달 앞두고 창간사무국에서 벌어진 일이 생생하게 생 각납니다.

당시 청암 선생님을 비롯해 창간 주역 선배들은 새로운 신문의 제호로 민족일보를 유력한 후보의 하나로 놓고 심사숙고를 거듭했습니다. 막판에 한겨레신문으로 제호를 결정 하기는 했지만, 민족일보는 민주·통일·진보언론을 내건 한겨레신문이 본받고 나아갈 사표였 습니다.

창간사무국에서 일했던 저한테 민족일보는 그렇게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청암 선생님은 한겨레신문 창간 3년 뒤인 1990년에 민족일보 영인간행 위원회가 출 범하자 그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조용수님의 뜻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앞장 섰습니다.

민족일보는 지난 1961년 5월19일 지령 제92호를 마지막으로 창간한지 100일도 채 못 되어 5.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강제 폐간 당하고, 조용수 사장님은 긴급체포되어 그 해 말 사형장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의 언론자유가 이처럼 야만적으로 짓밟힌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내 언론은 입을 다물었고, 국제저널리스트협회가 그 다음해에 조용수 사장님에게 국제기자상을 추서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을 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6년 11월에 민족일보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루 빨리 진상이 밝혀지길 기원합니다.

이상희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송건호 언론상' 심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암 선 생님의 뜻을 받들어 조용수 사장님을 수상자로 선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족일보 사건 진상규명과 조용수 사장님의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은 갔지만, 고인의 피붙이 동생으로서 민족일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시고 있는 조용준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송건호 언론상이 힘이 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처럼 뜻깊은 언론상을 마련해주신 청암재단 관계자와 청암 선생님 유족들

에게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정동익

언론탄압은 영원히 사라져야합니다

오늘 제 6 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신 고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유족들과 민족일보진상규명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억울하게 가신 고인의 높은 뜻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민족일보는 4.19 혁명의 산물이었습니다

맨주먹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을 타도한 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구호를 외치며 분단극복을 위한 통일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때 조용수사장은 민족일보를 창간해 민족통일운동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민족일보는 4.19 혁명이라는 시대상황을 민족적 관점에서 가장 정확히 반영한 신문이었습니다.

조용수사장은 사장 취임식에서 민족일보는 민족의 분열을 영속화시키는 작용에 대해 정력을 기울여 싸울 것이며 남북간의 민족의식의 추진과 생활공동체 연대를 추진하는데 지면을 과감하게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신문을 통한 평화통일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조용수사장은 이 나라 통일언론운동의 선각자이셨습니다.

그러나 4.19 혁명을 짓밟고 등장한 박정희 쿠데타세력은 조사장에게 엉뚱한 누명을 씌워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한 제물로 삼았습니다.

민족일보와 조용수사장에게 가해진 폐간과 사형은 4.19 혁명정신을 부정하고 언론자유를 압살한 중대한 범죄행위였습니다.

만약 조용수사장이 사형당하지 않고 민족일보가 살아 있었다면 우리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역사는 분명 다시 씌어졌을 것입니다.

다행히 민족일보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평가 노력이 뒤늦게나마 결실을 맺어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졌고 사법부에서 재심이 진행중입니다.

몇십년간을 진상규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오신 조용준 전무배 김자동 선생님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상하는 송건호언론상이 높은 뜻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32 세 젊은 나이에 꺾인 조용수사장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과 동지들께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수상자와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가 회복되는데 이 상이 보탬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처럼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청암언론재단 여러분과 송건호선생님의 유족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통일언론운동의 선각자이셨던 고 조용수사장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상을 계기로 이 땅에 민주주의의 적인 언론탄압은 영원히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

유족 대표 및 민족일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조용준

조용수 사장의 희생이 열매를 맺기를

며칠 후인 12 월 21 일은 조용수 사장의 기일입니다. 46 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당한 형님의 마지막 모습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섭게 추웠던 그날 우리 가족은 망우리 공동묘지의 딱딱하게 언 땅에 불과 서른 한살된 형님을 묻고 내려왔습니다. 참담했습니다.

그 참담함은 우리의 가정의 참담함만 아니었습니다. 조용수 사장의 죽음은 언론사적은 물론, 사회, 정치적 참담함의 시작이었습니다.

신문사 발행인을 사형에 처한 사건은 1883 년 <한성순보>가 생긴 이후 근대적 우리 言論史에서 처음 있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 혹독하다는 일제시대에도 정간, 폐간은 있었지만 발행인을 사형에 처한 경우는 없습니다. 암살이 다반사로 이뤄지던 해방정국의 혼돈 시기에도 신문을 만들었다고 언론인을 살해한 경우는 없습니다. 신문사 발행인을 죽인 이런 만행이 근대적 사법제도가 갖춰지고 문명화 됐다던 1960 년대에 자행됐습니다.

그에 대한 사형선고에 대해 국제사회는 '야만' '분노' '범죄' 등의 표현으로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독재자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조용수 사장의 죽음은 한 개인이 살해된 것이 아니라 한국 언론에 대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의 평화 통일세력에 대한 살해 행위였습니다.

지난해 12 월 5 일 입법, 사법, 행정 등 3 개 국가기관에서 추천한 인사가 모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국가는 법률제정 절차에서의 위법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감금 등 인권 침해에 대하여, 재판과정에서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 및 증거재판주의 위배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조용수에게 사형을 선고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과정이 애당초 불법이며 또 이 부당한 법을 적용한 경찰, 검찰이 불법을 자행했으며 증거도 없이 이 법조문에 적용시킨 재판과정 즉 사법부도 부당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권력이 총체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국가기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사실상 정부차원에서 조용수 사장의 명예회복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조용수 사장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져 재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마무리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용수가 당당히 명예회복 될 수 있던 것은 다름 아닌 40 여년간 쌓아온 소중한 우리의 민주화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 보다 나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인권을 위해, 고문이 없는 사회를 위해, 양심을 지키기 위해, 평화통일을 위해 투옥됐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까지 버렸습니까. 그 가운데에는 송건호 선생과 같은 올곧은 언론인이, 한겨레신문과 같은 올곧은 신문이 있었기에 민족일보에 대한 재평가와 조용수 사장의 복권이 가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상을 주신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상희 이사장님과 한겨레신문사 서형수 대표이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상을 송건호 선생 유족에게 가슴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상의 영광은 조용수와 그 가족만이 아닌 조용수 사장이 그토록 갈구했던 민주적이고 애족적인 평화통일세력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12. 17

민족일보 연구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민환

주제선정에서 다른 보수신문이 시의성을 중시한 반면 민족일보는 '사회적 중요성'을 중시하여 논설이나 1면 머리기사의 의제를 선정하였다.

시의성보다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제를 선정하고, 그 의제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야말로 민족일보의 핵심 편집전략이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런 편집전략은 민족일보가 짧은 기간에 많은 독자를 확보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지만, 언론에 대한 통제권을 쥐 정부당국이 민족일보에 대하여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제목에 주관성을 거침없이 구사하는 편집전략이 민족일보가 빠른 시일 안에 신문시장에 뿌리 내리는 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임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하나의 부메랑이 되어 민족일보의 단명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민족일보는 반미였는가? 전쟁의 참화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시점에서 미국에 대해 극단적 비판을 가한 사실을 유의한다면 민족일보는 반미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친소용공을 반미주의의 전제조건으로 가정한다면 민족일보의 대미인식을 반미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 이 신문은 여러 논설에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반소, 반공, 반북' 태도를 천명하였다. 민족일보의 눈에는 소련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분단의 주역이며 냉전 대립 체제의 원흉일 뿐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승만 세력이 국제정세에 편승한 반민족적 정치세력이라면 김일성 세력 역시 한치도 다를 바 없다. 이 신문은 "우리 영토와 인민의 분열을 조장했고 재통일을 방해해 온 것은 다름 아닌 미·소라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들과 이들의 냉전전략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온 남북의 집권자들" 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민족일보가 미국에 대해 보인 태도는 분단시대를 살면서 미·소 양대국의 제국주의적 전횡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지식인의 뿌리 깊은 반제정서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했다. 그러나 4월혁명 직후의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거리낌 없이 드러낸 그런 반제정서는 기득권 세력의 시각에서 보면 반미의식과 차별화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민족일보는 통일문제가 역사적이고도 절대적인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 하에 통일문제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족일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중립화 통일론'과 '남북 교류론'이다. 그러나 민족일보는 남북교류를 중립화 통일의 전제적 과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민족일보의 주장의 핵심은 역시 '중립화 통일론'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일보의 통일론이 북한과 동일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민족일보의 중립화 통일론은 '반공 반김일성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민족일보는 한결같이 북한 김일성 정권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둘째, '중립화 통일론'은 북한의 통일정책과는 그 본질이 다르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은 두 개의 한국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하나의 중립국가를 지향하는 민족일보의 통일론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셋째, '중립화 통일론'은 그 뿌리가 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월혁명 이후에 여러 혁신 정당들이 '중립화 통일론'을 정강으로 채택했고, 미국의 유력 상원의원과 저명한 정치학자도 한반도 중립화를 제의한 바 있다.

민족일보가 주장한 바는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립화 통일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단계의 조치로 남북교류를 활성화 해야 하며, 이런 일련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3단계 중립화 통일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법당국은 바로 이런 주장 자체가 국시를 위반하고 북한을 고무, 동조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민족일보의 발행인인 조용수에게 극형을 선고하였다.

민족일보는 사회적 역학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에 처한 서민대중의 권익을 대변하면서도 주류신문과 당당하게 경쟁하고자 하였고 판매 면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민족일보는 주류언론과 '대립각'을 세우고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대안언론'의 성격을 지닌 신문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다.

김광식은 1960년대 초의 혁신계의 투쟁을 반추하면서 그들이 보수 대 혁신의 갈등구조에만 집착하여 보수파와 협조하거나 제휴하는 측면을 소홀히 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를 '지식인 조급주의'로 규정한 바 있다. 민족일보 역시 이런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민족일보가 그런 조급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을 전술적 유연성으로 구체화 하였다면, 이 신문은 단명을 면하고 더 좋은 대안언론으로 합리적인 독자와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 이 글은 고려대 김민환 교수가 쓰고 나남출판에서 2006년 출판한 <민족일보 연구> 중에서 각 장의 결론 부분을 가려 뽑은 것입니다. <민족일보 연구>로 2007년 10월 한국언론학회 학술상 저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글의 사용을 허락하신 김민환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족일보 언론활동의 역사적 의미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홍석률

민족일보는 4월 혁명 직후 한국사회의 새로운 발전과 모색을 대변하는 신문이었다. 따라서 민족일보 언론활동에 대한 평가는 이것이 대변하려 했던 혁신세력의 활동, 특히 당시 통일운동의 흐름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통일운동은 이념적 양극화 내지 사회적 혼란을 상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사회가 4월 혁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가기 위한 움직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냉전체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색이었으며, 민족내부의 결집으로 원조경제의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하려는 운동이었고, 보수와 혁신 또는 기타 다양한 정치, 사회집단의 공존을 모색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 운동이었다. 민족일보는 이러한 움직임을 대변하고, 이를 선동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일보는 창간한지 100일도 못되어 5·16쿠데타를 맞이했고, 결국 박정희 등 쿠데타 주도세력에 의해 폐간 당하고, 사장 조용수는 사형 당했다. 일부 5·16 쿠데타 세력들은 자신의 거사 동기로 통일운동 등 '좌경적 분위기의 확산'을 거론하였지만 실제로 이것이 직접적인 동기를 형성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5·16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념적 문제라기보다는 승진정체 현상 등으로 말미암은 군 내부의 청년장교를 중심으로 한 불만세력의 존재, 미국 군부 세력의 장면정권에 대한 반감 등이 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이 쿠데타 직후 민족일보와 조용수 같은 혁신계 인사를 탄압한 것도 여기에 직접 위협을 느껴서라기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쿠데타 지도자였던 박정희는 좌익혐의로 체포되었던 경력이 있던 사람이었고, 최근 비밀해제 된 미국자료에 따르면 김종필도 당시에는 좌익 경력의 소유자로 혐의를 받고 있었다. 5·16 쿠데타 주도세력의 이념적 정체성 자체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당시 혁신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다. 거사 직후 쿠데타 세력들은 당시 정보기관이 갖고 있었던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체포하게 되어 있는 사람의 명단을 갖고 사람들은 잡아들였다. 당시 혁신계 탄압은 마구잡이식에 가까웠고, 때문에 온건한 혁신계 인사와 급진적인 혁신계 인사의 구분도 없어 또 다른 의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은 신문사를 만들 때부터 이미 서북청년단 출신 보수정치인으로부터 조총련과 연계되었다는 아무런 근거 없는 의심을 받았고, 장면정권도 이미 내사에 들어간

상태였다. 5·16 쿠데타 세력이 조용수를 여러 혁신계 인사 중에서 특히 주목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근거 없는 풍문에 근거한 것이라 생각된다. 박정희도 4월 혁명 직후 부산 군수기지사령관으로 있을 때 이 지역의 국회해산 데모가 조총련 자금에 의해 조종되고 있으며, 그가 시위대에 온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수 정치인들이 의혹을 제기해 곤경에 처한 적이 있었다. 편협하고 절대적인 이념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항상 편견이 합리적인 논리를 압도하기 마련이다. 쿠데타 세력이 오히려 민족일보의 논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조용수의 행적을 보다 자세히 분석했다면 민족일보와 조용수가 북한의 논리를 대변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쿠데타 이후 폭력적인 독재 권력에 의해 사회는 표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사회는 “야당의 정치활동과 혁명적인 음모가 구별되지 않는” 더욱 양극화된 사회로 치달았다. 그리고 냉전체제가 붕괴하고 민주화가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하는 현재에도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용공성 시비와 양극화 현상은 제대로 극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족일보가 4월 혁명 직후 제기하려고 했던 진정한 민주적 사회질서에 입각한 ‘보수와 혁신의 공존’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기억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2001년 12월 8일 열렸던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40주기 추념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4월 혁명 정국과 민족일보> 중에서 맺음말 부분입니다. 사용을 허락하신 홍석률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진실규명 결정 요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6.11.28 제 31 차 전원위원회의 결정

1. 5·16 주도세력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하여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등 모든 국가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고, 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고 이 법률에 의해 다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입법권을 부여(법 제 9 조)하였다. 이 비상조치법 제 24 조는 헌법규정과 배치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 비상조치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16 주도세력이 설치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고,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동법이 헌법보다 상위의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등을 제정한 것은 근대 입헌민주국가에서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만큼 국민주권주의 및 입헌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

또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3년 6월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혁명재판소에서 2심제로 제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2.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하여 국민투표에 붙여 1962. 12. 26. 제정된 헌법이 부칙 제 4 조 제 1 항에 의해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다. 그러나 군사정변을 통하여 물리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입헌민주주의 및 적법절차에 위반된 법률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는 일이다.

3. 당시 조용수 등에게 소급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1961. 6. 22. 제정되기 이전인 상황에서 체포·구금되었고, 당시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수사기관 10 일, 검찰 10 일이며, 검찰은 10 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 1961. 5. 18. 체포·구금된 때로부터 66 일간 구금되었다가 7. 23. 기소되었다.

1961. 5. 17. 발령된 인신구속에 관한 특별조치인 포고령 제 10 호는 계엄지역내에서 필요한 경우 체포, 구금 및 수색에 대하여 법원의 영장없이 집행할 수 있고 군사재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금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1961. 5. 16. 선포된 비상계엄은 5. 27. 12:00 해제되고 경비계엄이 선포되었다.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은 부칙에서 이미 수사,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동법에 의해 수사, 기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동법이 위헌인데다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수사는 적법절차상 위반임을 면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 당시 형사소송법상 최장 구속기간인 30 일을 위반한 구금기간은 불법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불법구금은 수사기관의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나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420 조 제 7 호, 제 422 조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4.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은 먼저 민족일보 관련자들을 체포하여 구금한 다음 그들에게 적용될 소급입법을 만들어 기소와 재판절차를 거쳐 처벌하는 과정을 밟았다. 조용수에 대하여는 사장의 지위에서 게재한 민족일보의 논설 등을 정당의 주요간부 지위에서 게재한 것이며 그 내용이 북한을 고무·동조하였다고 왜곡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감형 없이 사형을 집행하여 생명권을 박탈하였다.

당시 대외적으로 5·16 주도세력이 철저한 반공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대내적으로는 정권장악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군사정변의 제 1 호로 '반공'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으로부터 핵심주체세력의 사상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자 대외적으로 반공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줄 획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당시 혁신계의 주장을 강하게 대변하는 대표적인 신문이었던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를 희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5. 조용수가 운영한 민족일보는 영리법인으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 6 조에서 인정한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아니므로 민족일보사를 운영한 행위를 정당활동으로 볼 수 없고, 사회대중당 창당준위나 김달호 계 사회대중당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장

자료나 당시 언론보도에서도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의 주요간부로 활동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당시 혁신정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에서 간부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조용수는 민족일보사 사장 재직 당시 김달호 계 사회대중당의 주요간부로 활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의원 출마 시 공천을 받았던 사회대중당 창당준위에서조차 직책이나 활동 면에서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조용수는 정당의 주요간부라고 할 수 없는 만큼,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 6 조가 규정하는 진정신분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용수에 대한 사형 선고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증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장 1960. 11. 15. 국무원 제출 '사회대중당 정당등록신고서' 및 1960. 12. 5. 국무원 제출 '사회대중당 정당변경등록신고서'는 당시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 420 조 제 5 호가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의 간부의 지위에서 민족일보 사설 등을 게재하였다고 인정한 혁명재판소 상소심판부 판결은 그 자체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민족일보의 사설 등을 게재하는 것은 조용수가 사회대중당의 주요간부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민족일보의 사장의 지위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6. 조용수 사건 판결 당시에는 이영근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간첩죄에 대하여는 1 심부터 무죄를 선고한 상태였다. 이영근에게는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되었다.

또한 공소장에서 이영근이 조소수를 통해 민족일보에 자금을 전달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었던 만큼 조소수는 상당히 중요한 증인임에도 수사기관이 그를 석방하고(1961.8.2. 동아일보)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영근에 대하여도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또 변호인이 창간자금을 대었다는 민단계 재력가들의 명단을 제출하였음에도 당시 혁명재판소가 증인신문 등 자금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 당시 조용수는 민족일보의 "자금은 거류민단 및 그 주변의 양심적 기업가들한테 받은 것"이라고 신문지상에 해명하였다는 점. 치안국장 "민족일보의 운영자금이 조련 계에서 유입되었다는 데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상과 참고인들의 이영근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면 판결이 이영근이 간첩혐의자라거나 이영근이 민족일보의 자금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민족일보의 대 북한 인식은 민족일보의 사실에서 잘 드러나는바, 북한체제나 그 지배자인 김일성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민족일보가 주장한 중립화통일론은 혁신계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체제나 김일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었고, 하나의 한국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과는 그 지향하는 방향이 달랐으며, 그 전제로서 제기된 남북교류론 역시 그 내용과 지향점이 북한에서 말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 주장이 유사하다고 해서 북한의 기본 노선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남북학생회담 지지 역시 그 주장 자체가 북한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당시 시대적 분위기에서 도출된 찬반양론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민족일보의 논지가 북한의 통일방안 노선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민족일보 사실이나 기사의 어떤 대목이 북한을 고무, 동조한 것인지 적시하지 않고, 또한 그 사실과 기사 내용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그 제목만을 언급한 채 북한을 고무, 동조하였다고 판결한 것은 중대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8. 이에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한다.

국가는 진실규명된 반인권적, 반민주적 인권유린 행위에 대하여 기본법 제 4 장이 정한 바에 의거 피해자 조용수 및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자 조용수 및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